

사업설명회

안전은 권리입니다

『모기업-협력업체』
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

2022. 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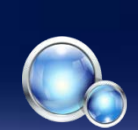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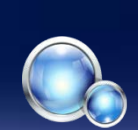
■ 중대재해 처벌법

○ 중대재해처벌법이란? (중대산업재해 부분)

-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**중대산업재해**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규
- **적용제외** 대상 :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) 또는 경영책임자
- 시행일 : '22.1.27. (50인 미만 사업장 등 : '24.1.27.)

○ 중대산업재해란?

-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를 야기한 재해
 -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-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 -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

○ 안전보건확보 의무

-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, 사업장의 특성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·보건 확보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○ 도급, 용역, 위탁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

-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조치
 - ※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



○ 처벌규정

-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
 - (사망 시)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,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
 - (그 외)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- ※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/2까지 가중
 - (양벌규정,법인) 사망 시 : 50억 이하의 벌금, 그 외 : 10억원 이하의 벌금
-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 이수


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○ 안전보건관리체계란?

-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, 대처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개선하는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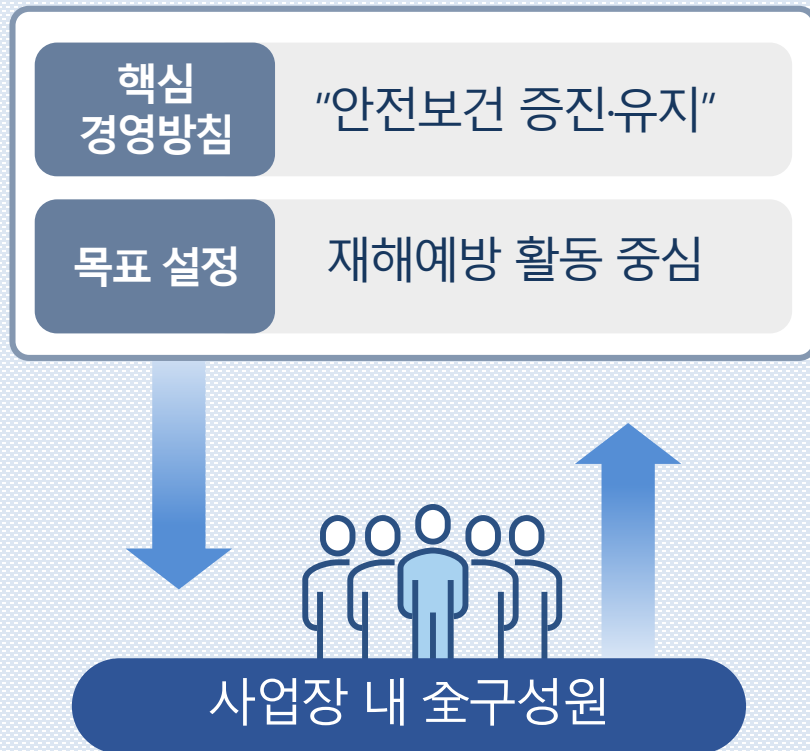
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· 이행




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

○ 1. 경영자 리더십 :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, 목표를 정한다.



☑ 「안전보건 증진·유지」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,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.

☑ 하청업체, 파견업체, 공급·판매업체 및 고객에게도 안전 보건 경영방침 을 알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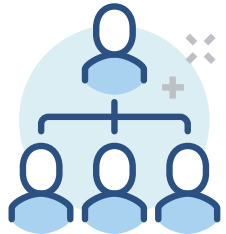
☑ '재해예방 활동'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 평가

☑ 사업장 내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, 관련 수급인과의 협의


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

○ 1. 경영자 리더십 :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(인력, 시설, 장비)을 배정한다.



안전보건 담당
조직 구성

☑ 안전보건 조직(담당자)의 제안이 원활하게
이행될 수 있도록 **조직체계 구성·재편**

- 대기업: 가급적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
- 중소기업: 정부의 기술지도사업, 안전관리전문기관·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 자원 활용 검토



예산배정

☑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**예산 배정**

-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·장비 확충,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, 비상조치 계획 수립·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예산 배정


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

○ 1. 경영자 리더십 :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, 참여를 독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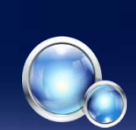


☑️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, 부족한 경우 추가 확보

☑️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만이 아닌,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화

☑️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 규정

☑️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부여, 적극적 참여자에 인센티브 등 긍정적 분위기 조성


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

○ 2. 근로자의 참여 :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.

☑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

-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
-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
- 안전보건관리규정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

공개 정보
예시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
-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
-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·기구 정보
-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



-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,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홈페이지에 게시
-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·기구 및 물질,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정보 공개


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

○ 2. 근로자의 참여 :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.

산업안전
보건위원회
구성·운영

- 근로자대표 참여

의견 수렴
절차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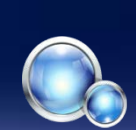
- '도급인·수급인 안전보건
협의체', '건설공사안전보건
협의체' 등 활용

‘작업 전
안전미팅(TBM)’
도입

- 사업장, 부서, 현장,
공정 단위 운영

신고·제안
절차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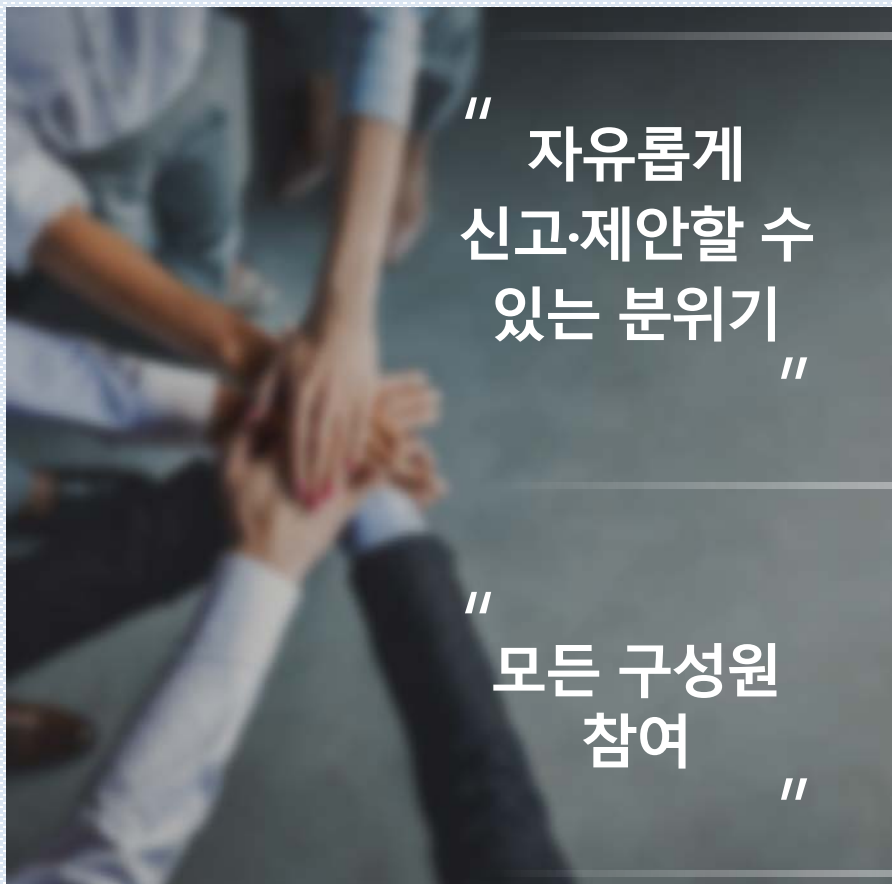
- 신고 및 개선방안 제안
- 익명성 보장
- 인센티브 부여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

○ 2. 근로자의 참여 :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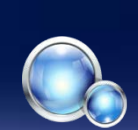
☑ 신고·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, 불이익은 제거

☑ 정기적으로 조치결과 공개

☑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

☑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,
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 참여

☑ 하청, 파견, 공급·판매업체와 의견 교환



■ 도급 시 안전 · 보건

◆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

- 유해한 작업의 (사내)도급금지

- (대상)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작업, 허가물질 제조·사용작업

※ 다만,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, 간헐적 작업과 고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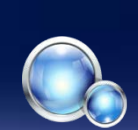
- 도급의 승인

- (대상) 중량비율 1% 이상의 황산, 불화수소, 질산,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

※ 다만,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

-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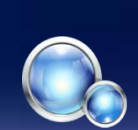
-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(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)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▣ 도급 시 안전 · 보건

-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
 -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 금지
-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
 -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
- 산업재해 통합관리
 - '18년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
(대상업종)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, 전기업 (대상규모)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
 -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
 - ※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,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, 중대산업사고가 발생 등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■ 도급 시 안전 · 보건

-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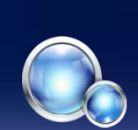
-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·체계적인 안전·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 관리
(대상) 도급인,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*
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
* 선박 및 보트 건조업, 1차 금속제조업,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

-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

-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(21개 위험장소)에서 작업하는 경우,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,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해 지배, 관리권이 있다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

-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

-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·보건조치 실시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■ 도급 시 안전 · 보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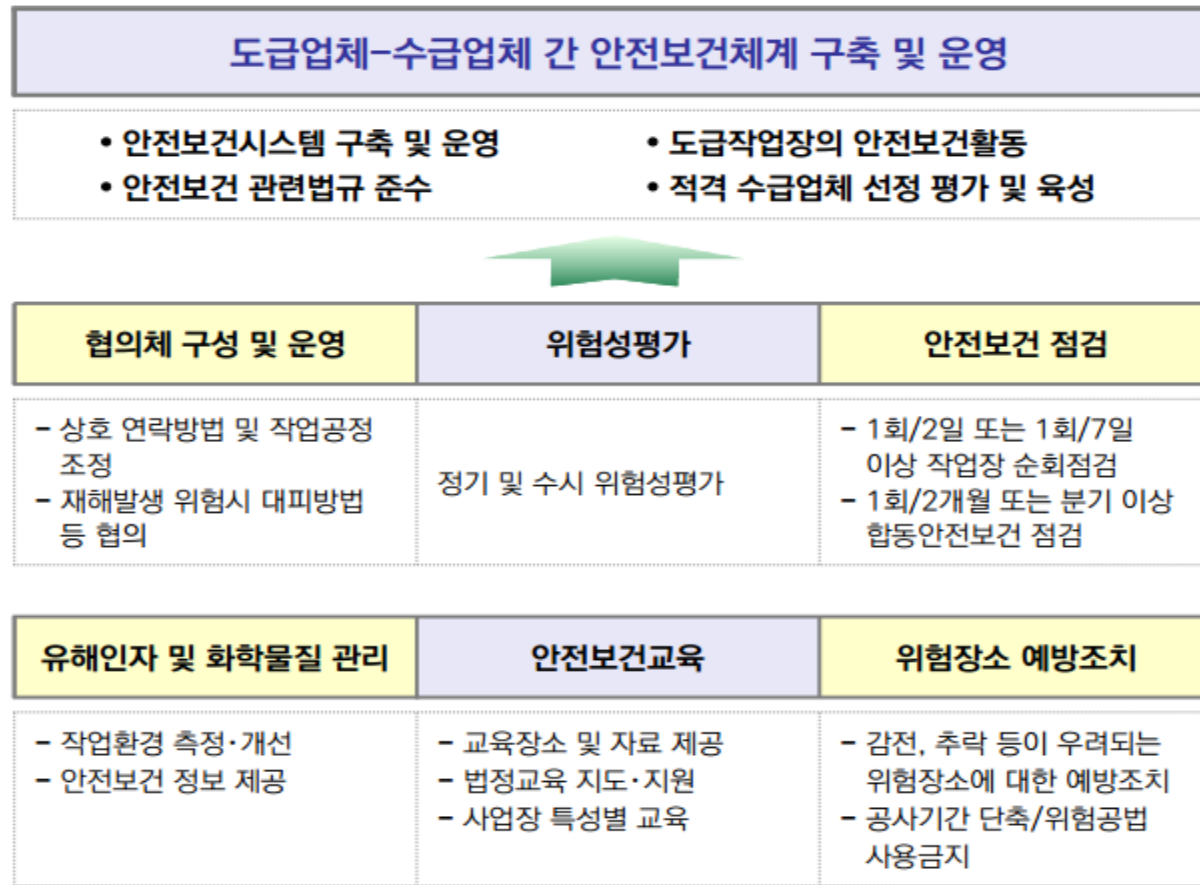
-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(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)
 -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
 - 작업장 순회점검(1주일 1회 이상)
 - 안전·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
 -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 -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
 -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, 내용, 안전·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
 - 합동 안전·보건점검 실시 (분기 1회 이상)
 - 안전·보건관리규정의 작성
 -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정·관리
 - 작업환경측정
 -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

[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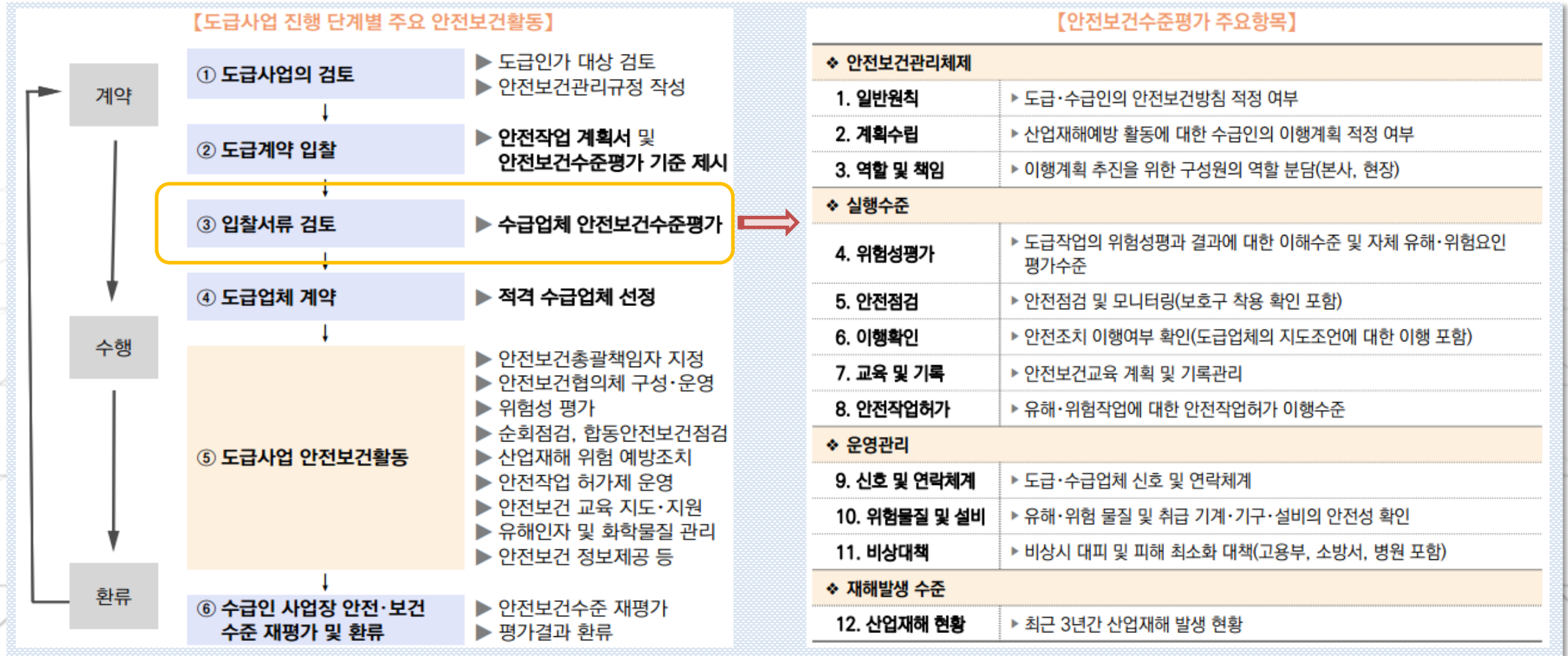
-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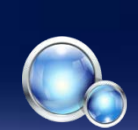
- 안전보건방침 명확화
-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
-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직무·책임·권한 설정
-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
-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
- 안전작업허가제 운영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■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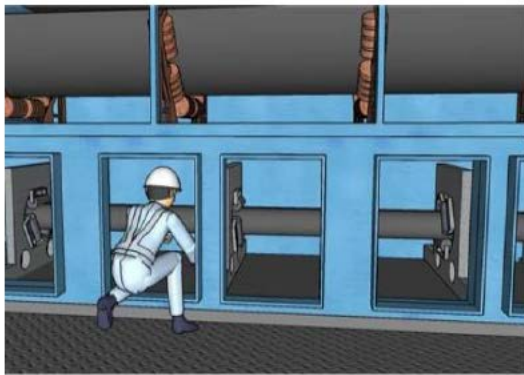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■ 도급 시 안전 · 보건

○ 도급사업장 재해유형

●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

▶ 도급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방호장치 없는 기계기구에서 작업 실시하여 위험에 노출



- 개방된 점검구에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던 중 압축기에 끼여 1명 사망



- 가동 중인 컨베이어 하부에서 청소 작업 중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

● 유해·위험정보 사전 미 제공

▶ 작업 관련 유해·위험정보를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아 수급인의 위험예측과 사전 대응 미흡



- 하수처리시설 내 인화성가스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폭발 2명 사망



- 콘크리트 양생 고체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 일산화탄소 질식 2명 사망



1. 주요 안전 · 보건 동향

■ 도급 시 안전 · 보건

○ 도급사업장 재해유형

● 혼재 작업 시 도급인 안전관리 소홀

- ▶ 같은 작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, 각 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도급인의 조정 및 관리 소홀로 대형사고 발생



- 조선소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충돌하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낙하하여 6명 사망 25명 부상



- 건물지하 설비공사현장에서 다수 하청근로자가 동시 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 8명 사망

●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

- ▶ 원가절감, 공기단축을 우선하는 계약으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없이 작업 진행



- 건조중인 선박 탱크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환기 불충분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형성되어 화재·폭발 4명 사망



- 냉각탑 내부 내장재(충전재)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냉각탑 내부로 유입된 질소에 의해 질식 4명 사망

□ 사업 목적

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한 협력업체를 위하여 모기업 주도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, 그에 따라 협력업체에 기술·재정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,

-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
-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한 자율 관리능력 향상
-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

❖ <근거>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(정부의 책무)

제62조(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)

제63조(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등 에 따른 모기업의 의무이행과 사회적 책임에 근거
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, 제5조(도급,용역,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), 제5조(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)

Ⅲ. 사업 절차 [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]



1 사업대상 선정 [고용부, 공단]

□ 참여대상 : 50인 이상 (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) 모기업 (건설·조선업 제외) 및 그 사내·외 협력업체

- 사내협력업체는 자율참여, 사회협력업체는 자율참여*

* 정비보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,사용 등 고위험 작업을 하는 사외협력업체 반드시 참여유도

□ 우선선정 기준

- ✓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고 다발 협력업체가 있는 모기업
- ✓ 산재예방관리 불량(중대재해 발생,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, 사회적 이슈) 사업장
- ✓ 공공기관
- ✓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기업
- ✓ '21년도 공생협력 프로그램 수립지도 사업장

2 협력업체 참여 대상

□ 사내 협력업체 : 전체 참여

□ 사외 협력업체 : 자율 참여

※ 정비·보수 및 유해·위험물질 제조·사용 등 고위험 작업을 하는 사외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

❖ 「유해· 위험물질 제조· 사용 사업장」 범위

- ✓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적용 관리대상물질(51종)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·취급·사용하여, PSM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
- ✓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(발암성·생식세포 변이원성·생식독성) 물질(79종) 제조·사용 사업장
- ✓ 그 밖의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사업장
(삼산화안티몬, 시안화수소, 메틸알코올,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등)

□

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(CMR) 물질(79종)

번호	화학물질명(한글)	화학물질명(영어)	CAS No.
1	펜타클로로페놀	Pentachlorophenol	87-86-5
2	크롬광 및 함유제제(열소정처리 경우만)	Chromite ore processing(Chromate), as Cr	7440-47-3
3	니트로메탄	Nitromethane	75-52-5
4	니트로벤젠	Nitrobenzene	98-95-3
5	p-니트로클로로벤젠	p-Nitrochloro benzene	100-00-5
6	디니트로톨루엔	Dinitrotoluene	25321-14-6
7	디메틸아닐린(아미노디메틸벤젠)	Dimethylaniline	121-69-7
8	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	N,N-Dimethyl acetamide	127-19-5
9	디메틸포름아미드	Dimethylformamide	68-12-2
10	디에탄올아민	Diethanolamine	111-42-2
11	1,4-디옥산	1,4-Dioxane(Diethylene dioxide)	123-91-1
12	디클로로메탄	Dichloromethane(Methylene chloride)	75-09-2
13	디하이드록시벤젠	Dihydroxybenzene(Hydroquinone)	123-31-9
14	2-메톡시에탄올	2-Methoxyethanol(Methyl cellosolve)	109-86-4
15	메틸렌비스페닐다이소시아네이트	4,4'-Methylenebis(phenyl diisocyanate)	101-68-8
16	메틸이소부틸케톤	Methyl isobutyl ketone(Hexone)	108-10-1
17	메틸클로라이드	Methyl chloride	74-87-3
18	메틸n-부틸케톤	Methyl n-butylketone(2-Hexanone)	591-78-6
19	벤젠(중량비율 0.1% 이상)	Benzene	71-43-2
20	1,3-부타디엔(중량비율 0.1% 이상)	1,3-Butadiene	106-99-0
21	1-브로모프로판(중량비율 0.3% 이상)	1-Butanol(n-Butyl alcohol)	106-94-5
22	2-브로모프로판(중량비율 0.3% 이상)	2-Bromopropane	75-26-3
23	브롬화메틸	Methyl bromide	74-83-9
24	비닐 아세테이트	Vinyl acetate	108-05-4
25	사염화탄소(중량비율 0.1% 이상)	Carbon tetrachloride(Tetrachloromethane)	56-23-5
26	스티렌	Styrene(Vinyl benzene. Phenylethylene)	100-42-5
27	시클로헥사논	Cyclohexanone	108-94-1
28	아닐린(아미노벤젠)과 그 동족체	Aniline &homologues	62-53-3
29	아세트알데히드	Acetaldehyde	75-07-0
30	아크릴로니트릴	Acrylonitrile	107-13-1
31	아크릴아미드	Acrylamide	79-06-1
32	알릴글리시딜 에테르	Allylglycidyl ether(AGE)	106-92-3
33	에틸벤젠	Ethyl benzene	100-41-4
34	에틸아크릴레이트	Ethyl acrylate	140-88-5
35	2-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	2-Methoxyethyl acetate	110-49-6
36	2-에톡시에탄올	2-ethoxyethanol(ethyl cellosolve)	110-80-5
37	2-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	2-Ethoxyethyl acetate	111-15-9
38	2-부톡시에탄올	2-Butoxyethanol, EGBE	111-76-2
39	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아세테이트	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	112-07-2

40	에틸렌이민	Ethylenimine	151-56-4
41	2,3-에폭시-1-프로판올	2,3-Epoxy-1-propanol(Glycidol)	556-52-5
42	1,2-에폭시프로판	1,2-Epoxypropane	75-56-9
43	에피클로로하이드린(중량비율 0.1% 이상)	Epichlorohydrin	106-89-8
44	요오드화메틸	Methyl iodide	74-88-4
45	이황화탄소	Carbon disulfide	75-15-0
46	클로로벤젠	Chlorobenzene	108-90-7
47	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	1,1,2,2-Tetrachloroethane	79-34-5
48	1,1,2-트리클로로에탄	1,1,2-Trichloroethane	79-00-5
49	1,2,3-트리클로로프로판	1,2,3-Trichloropropane	96-18-4
50	테트라하이드로퓨란	Tetrahydrofuran	109-99-9
51	톨루엔	Toluene(Toluol)	108-88-3
52	톨루엔-2,4-다이소시아네이트	Toluene-2,4-Diisocyanate(TDI)	584-84-9
53	톨루엔-2,6-다이소시아네이트	Toluene-2,6-diisocyanate	91-08-7
54	트리클로로메탄	Chloroform(Trichloromethane)	67-66-3
55	트리클로로에틸렌(중량비율 0.1% 이상)	Trichloroethylene	79-01-6
56	퍼클로로에틸렌	Tetrachloroethylene(Perchloroethylene)	127-18-4
57	페놀(중량비율 0.3% 이상)	Phenol	108-95-2
58	포름알데히드(중량비율 0.1% 이상)	Formaldehyde	50-00-0
59	스토다드 솔벤트	Stoddard solvent	8052-41-3
60	프로필렌이민	Propylene imine	75-55-8
61	피리딘	Pyridine	110-86-1
62	하이드라진	Hydrazine	302-01-2
63	헥산(n-헥산)	n-Hexane	110-54-3
64	황산디메틸	Dimethyl sulfate	77-78-1
65	1,2-디클로로에탄	1,2-Dichloroethane	107-06-2
66	납 및 그 무기화합물(중량비율 0.3% 이상)	Lead and Inorganic compounds, as Pb	7439-92-1
67	니켈 및 그 화합물(중량비율 0.1% 이상)	Nickel(Elemental)	7440-02-0
68	수은 및 그 화합물	Mercury(Alkyl compounds)	7439-97-6
69	이산화티타늄	Titanium dioxide	13463-67-7
70	카드뮴 및 그 화합물(중량비율 0.1% 이상)	Cadmiumandcompounds, as Cd(Respirablefraction)	7440-43-9
71	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	Cobalt(Metal dust &fume)	7440-48-4
72	오산화바나듐	Vanadium pentoxide(Respirable dust or fume)	1314-62-1
73	과산화수소	Hydrogen peroxide	7722-84-1
74	트리클로로아세트산(삼염화초산)	Trichloroacetic acid	76-03-9
75	황산(중량비율 0.1% 이상)	Sulfuric acid	7664-93-9
76	산화에틸렌(중량비율 0.1% 이상)	Ethylene oxide	75-21-8
77	일산화탄소	Carbon monoxide	630-08-0
78	염화메틸렌	Methylene chloride	75-09-2

3 프로그램 참여신청 [사업장 → 공단]

- 제출기간 : 2.21(월) ~ 2.28(월), 6일간
- 제출처 :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, 지역본부 또는 지사
- 제출서류

✓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

- [첨부1] 사업장 현황 조사표
- [첨부2]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
 - * 사내 협력업체는 전체, 사외 협력업체 중 고위험작업 업체는 모두 참여(*정비보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,사용 등 고위험 작업을 하는 사외협력업체 반드시 참여유도)
 - * 사업장관리번호, 사업개시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
- [첨부3]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*
 - * 신규 참여사업장은 희망 시 작성방법 컨설팅 지원

4 세부계획 수립 방문 컨설팅 [공단 → 사업장]

- 대 상 : '22년 신규참여 사업장 중 희망 사업장
- 기 간 : 2.21(월)~ 프로그램 심사 이전일(관할 광역본부, 지역본부, 지사에 문의)
- 컨설팅 내용
 - ✓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작성방법
 - ✓ 기타 사항

5 프로그램 심사 · 승인 [심사위원회]

- 심사 · 승인 : 3. 10(목) 까지
- 심사위원회 :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, 외부전문가로 구성(5~8명)
- 심 사 항 목

- ✓ 모기업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의지(비전, 인적·물적 추진계획, 방침 및 규정의 마련)
- ✓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(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산재취약사업장 모두 선정, 고위험작업 협력업체 전부 참여)
- ✓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(책임자급을 포함하여 조직구성 및 사장단에 보고하는 체계 구축)
- ✓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(적격 수급업체 선정, 고위험작업 작업허가 체계,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향상계획)
- ✓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(협력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계획과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)
- ✓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(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)
- ✓ 성과평가 계획의 적정성(계획대비 이행도 측정, 적용법규 준수 여부, 만족도 조사 등)



IV. 세부추진 절차 [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]
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표

■ 사업장명(모기업명):

평가항목	평가 지표(판단 기준)	판정
모기업의 공생협력 추진의지	□ 사업장이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의지가 있는가? ✓ 우수: 사업주(또는 경영책임자 등) 가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임.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과감한 인적·물적 투자 계획을 담고 있으며, 공생협력 원칙 등과 그 이행·확인의 내용을 포함한 방침 및 규정(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등)이 마련되어 있음 ✓ 보통: 사업주(또는 경영책임자 등) 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, 적극적이지 않으며,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, 방침 및 규정(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등)이 다소 미비함 ✓ 미흡: 사업주(또는 경영책임자 등) 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으며, 추진계획 및 모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, 방침 및 규정(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등)이 미흡함	☐ 우수 ☐ 보통 ☐ 미흡
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	□ 공생협력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나? ✓ 우수: 사내·외를 포함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산지취약 사업장을 모두 선정 ✓ 보통: 자체 선정기준이 없이 사내·외 협력업체를 선정 ✓ 미흡: 고위험 사업장을 누락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협력업체 중심으로만 선정 * 정비·보수, 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 등 고위험 사의 협력업체 포함 여부 확인	☐ 우수 ☐ 보통 ☐ 미흡
협력단 구성의 적정성	□ 협력단의 구성이 적정한가? ✓ 우수: 책임자 및 근로자대표 로 구성하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축 및 이행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직을 구성(외부전문가 등)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하고 활동 결과를 사업장에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됨 ✓ 보통: 책임자(공정장 이상)로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으나,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축 및 이행 지원 조직(외부전문가 등)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) 구성이 미비함 ✓ 미흡: 안전관리부서 단위 수준으로만 구성·운영됨	☐ 우수 ☐ 보통 ☐ 미흡
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	□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였는가? ✓ 우수: 도급사업 범주 준수 등(적극 수급업체(협력업체)선정 절차 등 포함), 고위험 작업(비정형작업 포함)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체계,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구축 및 운영계획이 협력업체별 공정·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·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립됨(근로자 참여원칙, 비상조치계획 포함) ✓ 보통: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,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✓ 미흡: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사업 중심으로 작성	☐ 우수 ☐ 보통 ☐ 미흡
협력단 활동의 적정성	□ 협력단의 공생협력 추진 활동 계획이 적극적인가? ✓ 우수: 자회 발전 수준, 위험공정 등 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) 계획과 협의회 정기적 개최 등 계획이 적극적임 ✓ 보통: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,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✓ 미흡: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	☐ 우수 ☐ 보통 ☐ 미흡
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	□ 협력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정한지? ✓ 우수: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에 따른 협력업체별 또는 항목별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·집행 계획 작성 ✓ 보통: 전체적인 예산계획은 있으나, 협력업체별 또는 개선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은 결여 ✓ 미흡: 전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없음	☐ 우수 ☐ 보통 ☐ 미흡
프로그램 성과평가	□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 계획이 적정한지? ✓ 우수: 달초 계획 대비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포함 ✓ 보통: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,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✓ 미흡: 단순 지회감소 효과만 평가	☐ 우수 ☐ 보통 ☐ 미흡
안전보건 계획 수립·이행	□ 안전보건계획 수립·이행 상태는 적정한지? (상시 500인 이상 주식회사 대상) ✓ 우수: 안전보건계획을 수립, 이사처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았으며 그 내용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,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,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적정하게 포함 ✓ 보통: 안전보건계획을 수립, 이사처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미흡함 ✓ 지도: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지 않음	☐ 우수 ☐ 보통 ☐ 지도
종합의견		

※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전 심사결과 '보통', '미흡'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한 후, 위원장이 위원 의견에 반영하여 '판정'을 조정하거나 원안을 확정하고, '종합의견'란에는 '보완요구' 또는 '불승인' 관련 핵심내용을 기재

□ 심사기준

- 승 인(미흡 0개)

- 보 완(미흡 1개~3개)

* 10 일 이 내 계 획 서 를 보 완
하 여 다 시 제 출 → 공 단 은
검 토 후 승 인

- 불승인(미흡 4개 이상)

6

유해위험요인 확인 실시 [모기업, 협력업체]

□ 유해위험요인 확인 추진 주체

- ✓ 유해위험요인 확인은 모기업(원청)·협력업체(하청)가 공동으로 수행
- ✓ 모기업·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간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거나, 공용의 장소, 혼재 작업 구역 등은 원청이 주도적으로 추진
- ✓ 외주업체에 의한 정비·보수작업 등과 같이 추진 주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청·외주업체 또는 해당 공정 하청·외주업체가 공동 추진
- ✓ 모기업은 협력업체별 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별 위험요인 개선대책 수립하고 개선계획서 제출

7 개선계획서 제출 [사업장 → 공단]

□ 제출기간 : 4. 28(목) 까지

□ 제 출 처 :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, 지역본부 또는 지사

□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✓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(협력업체별 실시 일정, 방법 등 실시현황)
- ✓ 위험요인 확인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방안 내용
 - * 보수·정비 작업, 개·보수공사 등 비정형 작업 포함
 - * Fatal-4 (추락·끼임·충돌·질식)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이행계획 등 포함
- ✓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, 일정 및 투자 예산(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명시)
- ✓ 위험성평가 인정,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 인증 지원계획

8 현장 기술지도 [공단 → 사업장] *평가지표개선에 따라 내용 일부 변경예정

□ 지도기간 : 5월~7월

□ 지도대상 : 참여 모기업의 50%

- ✓ 모기업별 협력업체는 20% 내외로 컨설팅 수행
- ✓ 협력업체는 위험성평가 등 타 사업과 연계 지원가능

□ 지도내용(제출된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지도 실시)

- ✓ 공생협력 프로그램 취지 설명 및 혜택 안내
- ✓ 모기업 및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역할 구분 지도
- ✓ 협력업체 일부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방향 등에 중점
- ✓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
- ✓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, 연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·운영 지도
- ✓ 사고사망 다발 5대 작업·기계 및 장소 중점지도 및 핵심 요구조치*

8 현장 기술지도 [공단 → 사업장]

- ※ **중점 지도대상 및 핵심 요구조치**(사고사망 다발 5대 작업·기계 및 장소)
(공통조치) 사전 위험성평가 ⇨ 정비·보수를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. 이행, 고위험은 안전작업허가제 운영
- ① 보수·정비 작업, 개·보수공사 등 비정형작업
⇨ 적격 수급업체(협력업체) 선정체계*, 작업허가제(작업 전 ~ 시운전단계) 구축 및 운영
*「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(2020-기술총괄본부-489)」참조
 - ② <충돌> 지게차
⇨ 자격자 조종, 안전작업계획서(안전통로 확보, 출입금지구역 구획 등) 작성 및 이행
 - ③ <끼임> 성형기, 로봇, 적재기, 컨베이어, 분쇄·파쇄기, 혼합·교반기, 다이캐스팅기 등
⇨ (정비·보수 작업) 전원차단, 전원 투입부에 잠금장치 또는 고리표 설치, (정상작업) 방호시설·안전장치 구비
 - ④ <추락> 비계·사다리 사용작업
⇨ 사다리 목적 외 사용금지, 적정 작업대·설비·보호구 사용
 - ⑤ <질식·화재·폭발> 밀폐공간 도장·용접·용단작업, 하수처리시설·맨홀·화학설비·반응기 내부작업, 콘크리트 양생작업
⇨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및 출입허가제 이행, 환기·가스농도측정 설비 구비·활용 등

9 추진실적 제출 [사업장 → 공단]

- 제출 기간 : 10월말까지
- 제출 처 :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
- 제출 내용

- ✓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 및 노력, 공생협력 규정(또는 안전보건경영방침등)
- ✓ 고위험작업(비정형작업 포함)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등 방침규정의 수립 및 전달체계
- ✓ 공생협력단 조직, 활동계획 및 실적,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수행조직 및 방법, 예산책정 등(정비보수, 공사 등 고위험 작업 업체 선정 등)
- ✓ 위험요인 개선대책에 따른 이행내용
- ✓ 근로자 참여절차 수립 및 시행,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
- ✓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
- ✓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 실적
- ✓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실적
- ✓ 자체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

10 **확인 기술지도** [공단 → 사업장] * **평가지표 개선에 따라 일부 변경예정**

- 지도 기간 : 11.1.(화) ~ 12.15.(목)
- 지도 대상 : '22년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전체(100%)
- 지도(모니터링) 내용

- ✓ 현장 기술지도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여부 확인
- ✓ 유해위험요인 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
- ✓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·평가 및 강평 실시
- ✓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등

□ 결과

- ✓ 현장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전수 평가위원회에 상정

11 등급평가 (평가위원회)

- **평가기간** : 12월 16일(금)
- **심사방법** : **평가위원회 개최**
 -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
- **평가대상** : 현장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, 확인기술지도보고서
- **등급구분** : 평가점수에 따라 A등급(90점 이상)*, B등급(80점 이상~90점 미만), C등급(70점 미만)으로 구분
- **평가 지표 및 기준(안)** ※ 평가 지표 및 기준은 의견수렴 후 3월 말에 확정하여 일선기관에 시달
 - 평가지표 개선중(3월말 확정, 공개)

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(안)

- 중처법 시행에 따른 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” 방향 지표 개선 추진
3월말 확정, 공개

V. 등급관리 · 혜택 (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)

평가등급	평가등급별 혜택	적용 시기	적용 대상	
			모기업	협력업체
A등급 (상위 10%)	- 정기감독 일부 유예* 및 연기요청권(90일) - 정부포상 우대 - KOSHA 18001 및 KOSHA-MS 사후. 연장심사비 1/2감면 * 자체감독 대상 선정 시 유예 * 단, 대형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물의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	참여 다음년도	○	○
A등급	- 정부포상(산재예방 유공) 우대 - KOSHA 18001 및 KOSHA-MS 사후. 연장심사비 1/2감면* * KOSHA 18001 및 KOSHA-MS 인증업무 처리규칙 별표5 참조	참여 다음년도	○	○
모든 등급	- KOSHA-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 (50인 미만) * KOSHA-MS 컨설팅비용 지원업무 처리지침 제7조 참조(지침 제200호)	수시	×	○
	KOSHA-MS 실태심사비 면제	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(참여 승인 전까지)	×	○
	클린사업 보조 및 산재예방시설 용자 우선지원	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	×	○
	-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혜택 부여(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) -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용 100% 적용 - 보증요율 0.2%p 감면	참여 다음년도	○	○
	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(60억 → 100억) *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판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 예정	참여 다음년도	○	○
	-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+보증 혜택(중소중견 기업) -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.5배 우대 및 보증(험)료 20% 할인	참여 다음년도	○	○

※ 비고 : 절대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, 90점 미만 ~ 80점 이상은 B등급, 80점 미만은 C등급



□ 발표대회 개요

- 개최시기 :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 시
- 장 소 : KINTEX(경기 고양)
- 참가대상 :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(모기업)
- 시상계획

구 분	훈 격	사업장수	시상내역
대 상	고용노동부 장관상	0명	상장 및 상금 (각 200만원)
최우수상	공단 이사장상	0명	상장 및 상금 (각 100만원)
우수상	공단 이사장상	0명	상장 및 상금 (각 50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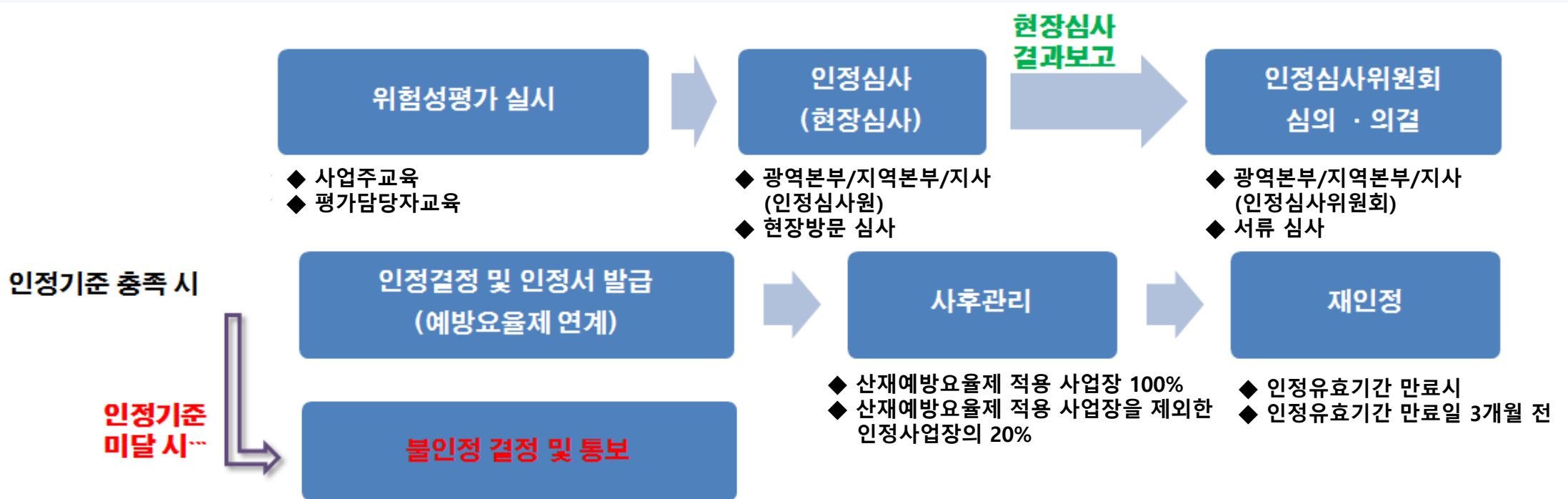
* 시상계획(사업장 수 등)은 추후 발표대회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 발표대회 세부일정 확정 시,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



□ 위험성평가 인정제도

- 대상 : 상시 근로자수 **100명**[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] 미만 사업장
- 신청 :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(<http://kras.kosha.or.kr>)에서 신청
- 업무처리절차



□ 산재예방요율제

- 개념 : 안전보건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인하
- 적용대상 :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50명 미만 사업장(보험료 징수법)

*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 합산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여부 확인

● 적용방법

- ✓ 보험료 할인율 : 위험성평가 인정 20%, 사업주 교육 인정 10%, 근로시간 단축 10%('21.6.30.까지)
※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 인정 시 합산하여 적용
- ✓ 인정 유효기간 : 위험성평가 인정 3년, 사업주 교육 인정 1년
- ✓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
- ✓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

- 인정취소 :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(고용부)

● 업무처리절차

산재예방요율의 신청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 수행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(안전보건공단)→보험요율 반영(근로복지공단)

※ 반드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번호로 신청(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전산입력 및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불가)

□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· 제출 제도

제출대상

다음의 "대상 업종 사업장"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"5개 설비 보유사업장"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업종코드	표준산업분류(중분류)	업종코드	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10***	식료품 제조업	261**	반도체 제조업
16***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262**	전자부품 제조업
20***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9***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22***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30***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3***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32***	가구 제조업
24***	1차 금속 제조업	33***	기타 제품 제조업
25***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	-	-

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- 1) 용해로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 2) 화학설비 3) 건조설비 4) 가스집합용접장치
- 5) 허가대상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『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』

※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29호 제3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) 참조

□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· 제출 제도

제출 및 안내 문의처

[제 출 처]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, 지역본부 및 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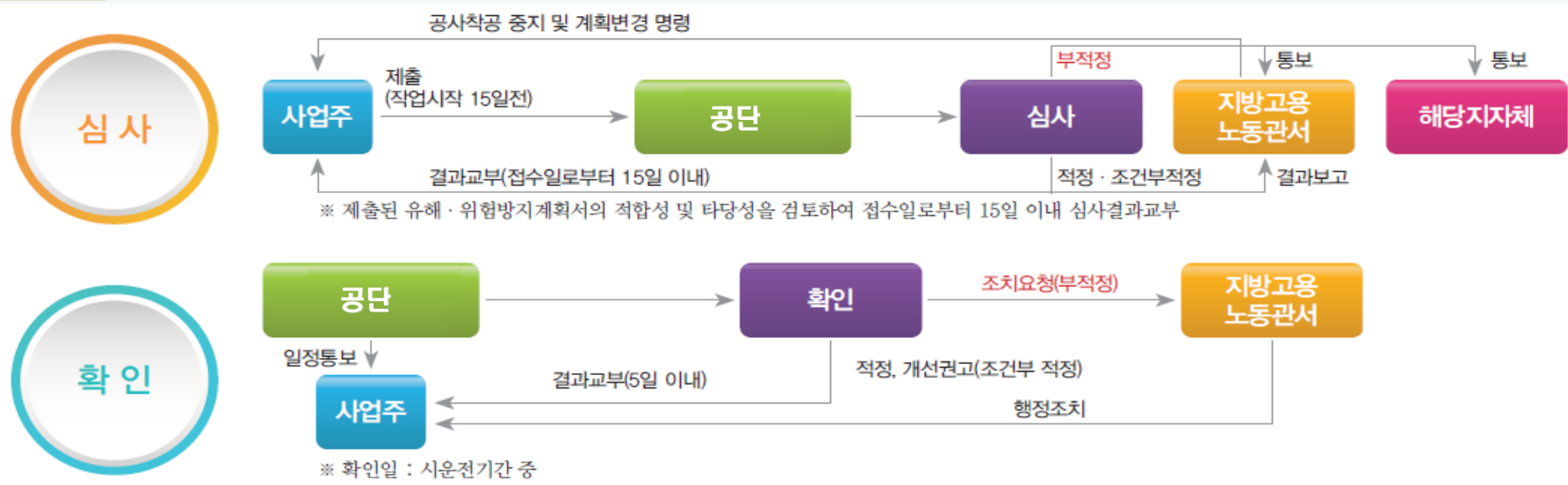
[제출서류] 신청양식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 서식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2부 (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)

[제출시기] (작업 시작 15일 전까지)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설치·이전·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

[안내문의] 공단 각 광역본부, 지역본부 및 지사(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)

- 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 ▶ 사업소개 ▶ 산업안전 ▶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▶ 사업안내

심사·확인 절차



□ **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**

고용부 협의중(3월말 확정공개 예정)



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이
우리나라의 안전보건 동반성장을 이끌어 갑니다.

감사합니다 !!!



안전은
권리입니다